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8월 20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항공운송, 항공정비, 상업, 관광, 문화 등의 연관 서비스 산업 파급효과가 큰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인천시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항공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나. 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현물출자 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항공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

마.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30일(금)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 시의회 산업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35, 팩스 032-440-876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공산업을 육성하여 도시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관문인 인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항”이란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을 말한다.
2. “비행장”이란 「항공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비행장을 말한다.
3. “공항지역”이란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이 위치한 지역과 제9호 및 제9호의2에 따른 공항구역과 공항개발예정지역을 말한다.
4. “항공레포츠”란 취미·오락·체험·교육·경기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행(공중에서 낙하하여 낙하산류를 이용하는 비행을 포함한다)활동을 말한다.
5. “항공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항공법」 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항공기 정비업,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 총대리점업, 항공기대여업,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 나.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류사업 중 항공운송을 이용하는 사업과 공항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다.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업

라. 항공레포츠 관련 사업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항과 항공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 군·구, 학계 및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항공문화를 창달하고 항공산업을 통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시장은 공항과 항공산업을 합리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한다.

1. 국내외 공항 및 항공산업 환경의 변화와 전망
2. 항공산업 정책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3. 항공산업 정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항공산업 정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5. 항공산업 정책의 우선순위 및 자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항공산업 정책에 필요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항공산업 정책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항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항, 비행장, 공항지역의 건설 및 개발 관련 사업
2. 공항지역에서의 각종 산업 활동 관련 사업
3. 공항과 연관된 주민 지원 관련 사업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 관련 사업
5. 항공레포츠 활성화 관련 사업
6. 항공산업 관련 인력양성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항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현물출자) 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제7조(기금) 시장은 항공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등의 유치) 시장은 항공산업에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9조(항공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항과 항공산업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항공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인천광역시 항공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련된 사항
3.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현안과 관련된 사항
4. 제7조 기금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공항과 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은 항공산업 관련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항공산업 관련 기관 공무원
3. 항공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4. 항공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항공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항공 산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4. 그 밖에 항공산업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항공산업의 지원·육성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외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